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법률을 맞이하며

이 중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2012년 8월 4일에 개정되어 2012년 11월 15일에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이 의무를 부과할거라느니 하면서 논란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면 이미 존재하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하도록 확대되어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이 법률을 참고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시행규칙 제38조의 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와 제38조의 3(응급장비의 관리)에서 설치 현황의 신고 및 장비에 대한 관리 점검 그리고 사용법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첫째, 구체적인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500세대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캐비닛 안에 1대의 자동제세동기만을 설치해도 이 법을 준수할 수 있어서,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

을 수 없다.

둘째,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파트 1개 동이 50세대 정도라고 가정할 때 10개 동 미만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그것을 규제하는 벌칙 규정이 전혀 없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벌칙이 없는 의무 규정은 효과가 없으며 준수하는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언적 성격의 법률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주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제대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상황에서 자동제세동기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사용되더라도 생존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자동제세동기 무용론'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더욱 더디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하여 그들의 주택 단지에 적절한 수의 자동제세동기를 현명한 방식으로 설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일반 대중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방법 밖에 없다.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의 방법을 찾아내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